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정효삼
전화 061-725-8703 / 팩스 061-725-4315

보도자료
2019. 12. 5.(목)

제 목

자살로 위장한 살인사건 3년만에 규명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광주지검 순천지청(지청장 김욱준)은 '16. 11. 29. 부산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자살사건이 사실은 위 여성과 동반자살을 기도하였다는 내연남에 의한 살인사건임을 밝히고 내연남을 '19. 11. 18. 구속, 12. 4. 기소하였음
- 사건발생 당시 내연남의 범행이 의심되어 수사가 착수되었으나 함께 자살 기도를 하였는데 여성만 사망하였다는 내연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후 3년 가까이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던 사안
- 순천지청은 '19. 9.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후 법의학 자문, CCTV 화질개선, 휴대폰 포렌직 등 시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시킨 후 자살로 위장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냄
-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,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

- A○○(43세, 자영업)

● 범죄사실 요지

- '16. 11. 29. 부산 초량동 소재 ○○모텔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B○○(여, 당시 38세)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,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 시킨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착화탄을 피워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사에 이르게 하여 살인

2 수사 경과

- '16. 11. 29. 사건 발생
- '18. 1. 17. 부산동부서, 부산지검에 사건송치(불구속 기소의견)
 - ※ 피고인이 치료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경이 불구속 지휘건의, 검찰 승인
- '18. 2. 9. 부산지검, 순천지청으로 사건 이송
 - ※ 피고인이 치료 등을 이유로 주거지 관할로 이송 요청
- '19. 9. 전면 재수사 착수 - 사건관계자 재조사, CCTV화질개선, 법의학자문, SNS 활동 분석 등
- '19. 11. 14.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
- '19. 11. 15. 피고인 검거
- '19. 11. 18. 피고인 구속
- '19. 12. 4. 구속 기소

3 수사 결과

- 피고인에 대한 혐의 구증을 위하여 부산(사건 발생지), 서울(법의학 자문, CCTV영상 등 분석), 순천(피고인 주거지) 등 다수의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다각도로 수사 진행
- **피고인의 범행과정 관련**
 -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, 피해자의 동의하에 착화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기도하였는데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

- 이에 피해자 시신에 나타난 장간막출혈, 안면부 일혈점 등에 대한 법의학 감정하여,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 당한 후 목이 졸려 실신하였다는 사실 확인
- 한편, 모텔 CCTV 화질 개선 (음성 없는 CCTV 촬영상황 분석을 위한) 농아자 상대 조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범행 직전 귀가하기 위해 모텔에서 나온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객실로 다시 끌고 간 사실도 확인

⇒ 즉, 피고인은 피해자를 ① 모텔 객실로 끌고 간 다음 ② **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** ③ **목 졸라 실신시킨 후** ④ **착화탄을 발화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를 무차별적으로 흡입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**

⇒ 피고인은 구속된 후,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일부 인정

● 피고인의 상태 관련

- 피고인은 자신도 일산화탄소 흡입하여 심각한 뇌손상 등을 입었다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함을 호소
- 이에 피고인에 대한 최근 과태료 부과내역을 단서로 피고인 이용 차량 및 그 차량에 부착된 피고인의 차명 휴대폰번호 특정하여, 피고인의 SNS 활동 등 행적 추적하는 한편, 건강보험공단 등 상대로 치료내역 조회

⇒ 피고인이 (수사기관에 출석 직전에 진단서 등 확보 차 병원 방문한 것 외에는) 최근 2년간 **일산화탄소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전무하고,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해 온 사실을 확인**

⇒ 피고인은 구속된 후, 일산화탄소 후유증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 직후 기존 휴대폰 폐기하고 차명폰 사용하였다고 일부 자인

4 향후 계획

-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, 피해자 유족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할 예정 ☐